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자조달지급 시스템등을 통해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7항제3호 신설)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조달청('25. 12. 4)

라. 기 타 : 해당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를 “발주자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계좌)”를 “계좌,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약정계좌에 입금받은 즉시 제1호 나목에 따라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된 금액을 각각 지급대상자별 수령계좌로 자동 이체할 것(전자조달시스템등을 사용하는 수급인은 자동이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 ~ ⑥ (생략) ⑦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구·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생략) 2.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 (생략) 나. 약정계좌(제1호다목 단서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발주자가 ----- ----- 가. (현행과 같음) 나.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이 자동으로 생성한 계좌에 직접 입금(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직접 입금)할 것

<신 설>

⑧ · ⑨ (생략)

----- 계좌,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3.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약정계좌에 입금받은 경우 제1호 나목에 따라 청구된 금액을 지급대상자별 수령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할 것(전자조달시스템등을 사용하는 수급인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⑧ · ⑨ (현행과 같음)